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형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93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년 11월 4일
발 의 자 : 문형주 의원(1명)
찬 성 자 : 강구덕, 김영한, 김창원,
박기열, 우창윤, 우형찬,
유동균, 유 용, 이윤희,
전철수, 조상호, 한명희,
허기회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중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출하여 조성되는 수입은 실질적으로 “전출금”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므로 동 기금의 조성재원의 명칭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금의 조성재원 중 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“전입금”으로 함(안 제3조제2호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·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2호 “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제1호 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교육비특별회계 <u>출연금</u></p> <p>3.~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교육비특별회계 <u>전입금</u></p> <p>3.~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제1조(시행일)</u>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<u>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</u>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<u>제3조제1항 중 제1호 “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”을 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”으로 한다.</u></p>